

제주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2나16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2나16659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단505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현 담당변호사 최호웅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반희성

변론종결 2024. 4. 15.

판결선고 2024. 6. 3.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단505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2, 6 내지 11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1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39,048,000원, 피고 C은 95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D'이라 한다)은 E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F'라 한다)는 D으로부터 제주시 J 토지(이하 분필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D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D의 E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F의 설립자로서 E에게 현금으로 2004. 11. 30. 5,000만 원, 2005. 1. 19. 4,000만 원, 2005. 5. 15. 5,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F가 인수한 위 D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은 F와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합1554호로 F가 인수한 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2009나1131,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F는 D으로부터 F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자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대법원 2011다24463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될 당시 원고는 E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절취당하여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E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로써 D은 E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D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2019. 8.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나머지를 2019. 9. 17.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D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39,048,000원, 피고 C은 95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1, 2, 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E의 증언을 종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E은 2004. 7. 22. D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04. 9. 5.로 정하여 대여하되 D이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4.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04. 11. 13. D의 채권자인 E 등과 사이에, 공동출자를 하여 F를 설립한 다음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D이 진행하던 콘도 신축공사를 계속하자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 등과 함께 2004. 11. 17. 발기인이 되어 F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F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③ 2004. 12. 20. D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K은 2005. 1. 초순경 원고를 만났는데 원고는 K에게 'F가 D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D의 부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후 K은 원고와 함께 2005. 1. 19. E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대한 채권을 모두 해결해주겠으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2005. 1. 20.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④ K은 D을 대표하여 2005. 2. 2. F와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등 D의 자산을 15억 6,3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은 F가 14억 6,300만 원의 D의 채무(D의 E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 포함)를 인수하여 변제하고, F 측이 D의 주식 중 60%에 대한 매수대금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명의의 각 대위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대위변제확인서에는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대위변제확인서(갑 제2호증)

2005년 1월 19일 (주)H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금 1억 4천만원을 A(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9. 15.

위 확인자 E

대위변제확인서(갑 제22호증)

주식회사 D 토지에 설정된 E의 근저당권(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4. 7. 23. 접수 제 56791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채권을 2004. 11. 13. (주)F 설립 동업계약에 1억 원으로 환가하여 현물출자 하기로 하였으나, E은 발기인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A(원고)에게 자신의 출자의무를 승계하고, (주)D 토지에 근저당설정 된 1억 4,000만 원을 대지급 해 줄 것을 요청하여, A(원고)는 (주)F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E 본인의 출

자의무를 승계하고 합의한 뒤, A(원고)는 E의 (주)D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한 (주)D의 차입금 1억 4,0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2005. 5. 15.까지 E 본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E 본인은 위 근저당권의 (주)D 차입금 1억 4,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여 변제받았습니다.

그리고 A(원고)로부터 2회차 금액을 수령하여, 2005. 1. 19. E 본인은 (주)D 토지에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D 토지에 E의 근저당권 설정된 1억 4,000만 원의 (주)D 차입금을 E 본인에게 A(원고)가 틀림없이 대위변제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위 확인자 E

다. 판단

원고는 F가 인수한 D의 E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자신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이 D에 대하여 가진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22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D의 E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즉 원고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F의 설립자 내지 실질적 사주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F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F는 D으로부터 E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인수하고 E에게 위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F의 주식을 대가로 지급하면서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어서 위 금액 상당도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F가 D에게 자산을 반환함에 있어 위 금액도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실질적 사주인 원고가 E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현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② 더욱이 F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은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은 K이 원고와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말소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법원도 ‘F는 E 등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출자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은행에 보관시켰다가 다시 인출하여 이를 E에게 돌려주는 가장납입 방식으로 설립된 점, E 등은 D에 대한 채권을 F에 출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을 F에 출자하여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D에게 한 적이 없는 점,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은 원고와 K의 말을 듣고 근저당권들을 말소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채권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F로부터는 돈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서 본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F가 D의 E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F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E이 1억 4,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와 K의 말을 듣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 E은 관련 민사사건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E의 채권을 원고가 현금으로 전액 대위변제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달리 위 증언일로부터 5년 내지 14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E 명의의 각 대위변제확인서는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4. 4. 30.자 변론재개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판사 류지원, 판사 정혜미

별지